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가합5830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A(캐나다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최용석

2. B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6.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C에게 위 가.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28. 접수 제1268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C에게 위 가.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30. 접수 제1284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관련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C의 연대보증
주식회사 D(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6. 12.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관련 회사의 대표자인 C는 관련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관련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보증서를 제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대출은행	대출금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한
----	------	-----	---------------	--------	--------

1	E은행	166,000,000원	2017. 6. 12.	149,400,000원	2018. 6. 11.
2	F은행	654,000,000원	2019. 11. 29.	555,900,000원	2020. 11. 27.
3	E은행	470,000,000원	2020. 6. 11.	376,000,000원	2020. 11. 27.
4	E은행	108,000,000원	2020. 6. 11.	86,400,000원	2020. 11. 27.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기한을 순차로 연장하여 주던 중, 2021. 5. 27.경 위 각 신용보증기한을 2021. 8. 27.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나. 관련 회사의 주채무 이행의무 위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관련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원고는 관련 회사와 C에 대하여 보증금액 상당의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회사는 2021. 7. 13. F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F은행은 2021. 8. 3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또한, 2021. 8. 27.경 위 각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관련 회사는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1. 8.

E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22,360,991원을, F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64,000,75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C의 각 근저당권설정행위

C는, ① 2021. 5. 25. E은행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관련 회사,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342,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① ②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21. 6. 28. 캐나다국민인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③ 다시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1. 6. 3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캐나다국민인 피고 A을
상대로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서도 국제사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도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C와 피고 A이 그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거기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고(구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특히 그 계약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구 국제사법 제26조 제3항),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재한 대한민국 법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도 대한민국 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2)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회사의 대표자인 C는 2017. 6. 12.경부터 2020. 6. 11.경까지 관련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관련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원고는 관련 회사와 C에 대하여 보증금액 상당의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사실, 관련 회사는 2021. 7. 13. F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였고, 2021. 8. 27.경 각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그런데 C는 관련 회사의 위 각 주채무 이행의무 위반일로부터 불과 보름 내지 두 달여 전인 2021. 6. 28. 피고 A과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30. 피고 B과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C는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함으로써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보름 내지 두 달 이내에 관련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사전구상금채권은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C의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는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해의사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담보조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2,305,000,000원이고, 불과 이틀 후인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도 그 가액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외에도 I과 함께 서울 중구 J 외 2필지 지상 K건물 제3층 L호(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관련 부동산 중 C가 보유한 1/2 지분을 '관련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는 E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인 근저당권, 주식회사 M 앞으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그 각 피담보채무액은 360,000,000원과 150,000,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C와 I은 2021. 8. 4. 관련 부동산을 88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그보다 한 달여 앞선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관련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관련 부동산 지분 중에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185,000,000원 $\{=(880,000,000\text{원} - 360,000,000\text{원} - 150,000,000\text{원}) \times 1/2\}$ 상당이다.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관련 부동산 지분 이외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결국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C의 적극재산은 합계 2,49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지분 2,305,000,000원 + 관련 부동산 지분 185,000,000원) 상당이다.3)

②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는 H은행에 대한 채무 413,428,986원 상당, N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330,000,000원 상당, O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790,000,000원 상당, E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59,000,000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합계

1,165,470,623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원금 중 E은행 관련 부분 합계 611,800,000원(= 149,400,000원 + 376,000,000원 + 86,400,000원) + F은행 관련 부분 553,670,623원4)} 상당의 사전구상금채권도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C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C는 2021. 7. 9.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대한민국, 채권최고액 503,000,000원인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4. 대한민국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는 상당한 조세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

결국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액수가 특정되는 것만 합산하여도 2,857,899,609원(= 413,428,986원 + 330,000,000원 + 790,000,000원 + 159,000,000원 + 1,165,470,623원)에 이르고, 그밖에도 C는 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만일 C가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C의 소극재산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③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훨씬 상회하여 C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사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관련 회사의 대표자인 C는 관련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기 불과 보름 내지 두 달여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줌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피고 A은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피고 B은 C에게 2019. 5.경 250,000,000원, 2020. 9.경 200,000,000원을 각 대여한 후 그로부터 1년 내지 수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1. 6. 30.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원고는 사해행위인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수익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A은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은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석 판사 이경민 판사 이현지

목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서울 서초구 000, 000

서울 서초구 000

000

[도로명주] 서울 서초구 000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000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243.99㎡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1. 서울 서초구 000 대 595㎡

2. 서울 서초구 000 대 595㎡

3. 서울 서초구 000 대 258㎡

대지권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2분의 1

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

사건 2021가합583096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1. A(캐나다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최용석

2. B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1가합58309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22. 12. 16.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대표자 이사장 P”를 원고 “대표자 이사장 Q”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19.

재판장 판사 김형석 판사 이경민 판사 이현지

- 1)원고는 당초 E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E은행이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2)피고들은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C와 피고들 사이의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 각하를 구하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전항변으로 취급하지는 않기로 한다.
- 3)원고는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이 2,74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60,000,000원과 150,000,000원을 C의 소극재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므로, C의 적극재산을 원고의 주장보다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4)갑 제5호증 중 '보증잔액'란 참고.
- 5)이에 관한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분당세무서장은 2022. 5. 24. '소송당사자 본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